

『법학논총』
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운영규칙

제정: 2014. 11. 1.
개정: 015. 10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우수논문 후보요건) ① 우수논문의 선정 대상이 되는 후보논문은 선정일 직전 1년간 ‘법학논총’에 게재된 논문 중 ‘법학논총 논문심사규정’의 심사기준에 따라 취득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논문으로 한다.

② 본연구소의 편집위원은 선정일 직전 1년간 ‘법학논총’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후보논문을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다.

제3조(우수논문 선정) ① 매년 상반기 중에 편집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논문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각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, 피인용지수 및 논문심사규정 제4조 제1항 소정의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에게 그 평가를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1.>

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에 기초하여 우수논문을 선정한다.

제4조(우수논문 시상) ①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한다.

② 시상의 종류는 최우수논문상과 우수논문상으로 한다.

제5조(경과규정) ① 이 규칙은 2014년도 법학논총 게재논문부터 적용한다.

② 시상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.

부칙[2014.11.1]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5.10.1.]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